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6회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8. 11. 27 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”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이주현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 서

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이주현)

1. 회부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18. 11. 19
- 회부일 : 2018. 11. 20 (의안번호 : 18-114)

2. 제출이유

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.12.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상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<u>제2조의2(존속기한)</u>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<u>까지로 한다.</u>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'지방재정법' 제9조(회계의 구분) 제3항
- '지방재정법' 부칙(2014.5.2) 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) 제2항
- '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'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제3항
- 입법예고 : 생략
 - 생략사유 :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가능
- 부패영향 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 영향분석 평가 : 없음
- 행정상 규제 :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

- 이진 개정조례안 “의료급여 특별회계”는 “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라는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.
- 이에따라, 우리 마포구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위해 이진 조례안을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.12.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조례 개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

- 의료급여법에 의거 제정된 이진 조례는 2007년 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으나 그동안 존속기한 규정이 없었습니다.
- 한편, ‘지방재정법’ 2014.5.28일 부칙에 의하면 “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.12.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진 조례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.12.31일로 종료되게 됩니다.
- ‘지방재정법’ 제9조(회계의 구분) 제3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에따라, 2018.11.19일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다. 검토 종합의견

- 위와 같이 조례개정의 필요성 조례개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위해 적립형 기금이 아닌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집행부 소관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의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·진행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

※ 참고자료

1.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
2. 지방재정법 부칙(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)
3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[참고 자료 1]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8. 6. 28] [법률 제15528호, 2018. 3. 27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 02-2100-3506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 [전문개정2011.8.4.]

[참고자료 2]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8. 6. 28.] [법률 제15528호, 2018. 3. 27., 일부개정]

부 칙

〈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〉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, 제27조의5제2항,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, 제33조제11항, 제74조, 제87조의3,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[참고자료 3]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 02-2100-3518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